

평가강령 실행보고서 2018

2019.02

들어가는 말

Moody's Investors Service(이하 "Moody's")의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2006년 7월 Moody's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Moody's CoPC")를 토대로 신용평가 프로세스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시한 평가강령(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KIS CoPC")을 제정하였습니다.¹

당사는 KIS CoPC를 준수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사를 공정하게 대우함은 물론 발행사로부터 제공 받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평가방법론, 평가정책과 관행 및 그것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의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KIS CoPC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이하 "IOSCO")에서 제정하는 신용평가사의 행동규범인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이하 "IOSCO Code")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및 2015년 IOSCO Code의 개정 사항을 2009년 8월 및 2016년 5월에 KIS CoPC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IOSCO Code에 명시된 원칙과 의견을 같이 하며, KIS CoPC를 통해 IOSCO Code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부터 KIS CoPC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12월까지의 KIS CoPC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결과와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KIS 회사개요 및 신용등급의 의미

당사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수준 높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증권 혹은 채무증권 발행사의 신용도에 관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평가등급 및 관련된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credit commitments),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의미합니다. 신용등급은 두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는 바, 하나는 만기가 도래한 계약상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도 발생시 예상

¹ 평가강령(KIS CoPC) 전문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etc/code_of_conduct.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평가강령과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준법감시실(02-787-22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속성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특정 채무증권을 매수, 매도 혹은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투자자가 해당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 보유 혹은 매도를 고려 중인 각 유가증권에 대하여 스스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하에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I. 평가강령의 개정

당사는 2018년 1월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지 사전등급제공 금지의무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현지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KIS CoPC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해 개정사항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KIS CoPC(2016.05)	개정 후 KIS CoPC(2018.01)
<p>I. 용어의 정의</p> <p>관련 문서</p> <p>4. "윤리강령"은 KIS가 채택한 행동강령이다</p>	<p>I. 용어의 정의</p> <p>관련 문서</p> <p>4. "<u>업무행동강령</u>"은 KIS가 채택한 행동강령이다</p>
<p>III. 규정</p> <p>1.4 신용등급은 ~ KIS의 담당 애널리스트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알고 있고 평가와 유관하다고 모든 정보를 반영하되~</p> <p>1.16 KIS와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 없이, 특정 신용등급을 보장 또는 확약하지 않는다. 단, Structured Financing 혹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한 사전검토는 예외로 한다.~</p> <p>2.15 KIS의 직원은 KIS 윤리강령에서 ~</p>	<p>III. 규정</p> <p>1.4 신용등급은 ~ KIS의 담당 애널리스트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알고 있고 평가와 <u>유관</u>하다고 믿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되~</p> <p>1.16 KIS와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 없이, 특정 신용등급을 보장 또는 확약하지 않는다. (삭제)</p> <p>2.15 KIS의 직원은 KIS <u>업무행동강령</u>에서 ~ (이하 같음)</p>

II. 평가강령의 실행 현황

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 (1.1~1.3)

당사는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해 2~3년 주기로 개정/보완하는 것을 권장하며, 내부 모니터링 절차에 의한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점검 또는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방법론의 개정 내지 신규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은 당사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²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현재의 방법론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당사의 산업별, 자산별 평가방법론의 신규, 개정 현황을 보면, 평가방법론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 개발 및 개정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에 방법론 체계를 크게 신용평가 일반론, Cross-Sector 방법론, Sector-Specific 방법론, 기타 방법론 등으로 개편하면서 총 19건의 평가방법론을 신규 제정하고 총 6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최근 4년간 당사의 평가방법론 신규, 개정 현황]

부문	방법론	2015	2016-2017. 1	2017. 2~12	2018
일반론	KIS의 평가방법론 체계	-	-	-	신규
	신용평가의 의의	-	-	-	신규
	신용평가의 대상과 등급정의	-	-	-	신규
	신용평가의 절차	-	-	-	신규
	신용등급 결정구조	-	-	-	신규
	산업위험의 분석	-	-	-	개정
	영업위험의 분석	-	-	-	개정
	재무위험의 분석	-	-	-	개정
	경영관리위험의 분석	-	-	-	신규
	계열위험의 분석	-	-	-	개정
	현금흐름의 분석	-	-	-	개정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분석	-	-	-	신규
	기타 신용평가대상의 신용위험 분석	-	-	-	신규
	자체신용도 및 계열지원가능성의 분석	-	-	-	개정
	유동성위험의 분석	-	-	-	개정
	부외부채의 분석	-	-	-	개정
	경기변동과 신용평가	-	-	-	개정

² 평가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는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개정, 적용 등의 제반 절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침에 산재되어 있던 평가방법론 관련사항을 재정리하여 2013년 12월 '평가방법론 운용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였음.

부문	방법론	2015	2016~2017. 1	2017. 2~12	2018
	합병 및 분할과 신용평가	-	-	-	개정
	외화표시채권의 신용평가	-	-	-	개정
	개별특약과 신용평가	-	-	-	신규
	단기신용평가	-	-	-	신규
	부도정의 및 Credit Event시 등급정책	-	-	-	신규
Sector- : 기업	제조업	개정	-	-	개정
	음식료산업	-	-	-	개정
	해운산업	-	-	-	개정
	유통산업	-	-	-	개정
	철강산업	-	개정	-	개정
	정유산업	-	-	-	-
	석유화학산업	-	-	-	개정
	건설산업	-	-	-	개정
	자동차산업	-	-	-	개정
	자동차부품산업	-	-	-	개정
	전선산업	-	-	-	-
	의류산업	-	개정	-	개정
	전자산업	-	-	-	개정
	항공운송산업	-	-	-	개정
	물류산업	-	-	-	개정
	호텔 및 숙박산업	-	-	-	-
	도시가스산업	-	-	-	-
	SI산업	-	-	-	개정
	조선산업	-	-	-	개정
	비금융 GRI	-	-	-	개정
	지방개발공사	-	개정	-	개정
	통신서비스업	-	-	-	개정
	제약산업	-	-	-	개정
	시멘트산업	-	-	-	개정
	레미콘산업	-	-	-	-
	중공업	-	-	-	개정
	제지산업	-	-	-	개정
	미디어산업	-	-	-	개정
	종합상사	-	-	-	개정
	민자발전산업	-	-	-	개정
	외식산업	-	-	-	개정
	서비스업	-	-	-	신규
Sector- Specific : 금융	은행산업	-	-	-	개정
	증권산업	-	-	-	개정
	상호저축은행업	-	-	-	개정
	할부/리스금융업	-	-	-	개정
	신용카드산업	개정	-	-	개정

부문	방법론	2015	2016~2017. 1	2017. 2~12	2018
	손해보험산업	개정	-	-	개정
	생명보험산업	개정	-	-	개정
	기타금융업	-	-	-	개정
	금융 GRI	-	신규	-	개정
	해외은행	-	-	-	신규
Sector-Specific : SF	Structured Finance 신용평가 일반론	개정	-	-	개정
	Credit Facility	-	개정	-	-
	신용카드 유동화	-	-	-	개정
	오토론 유동화	개정	-	-	개정
	매출채권 유동화	-	-	-	개정
	리스채권 유동화	개정	-	-	개정
	ABCP 프로그램	-	-	-	-
	장래채권	-	-	-	개정
	PF Loan 유동화	-	-	-	개정
	Synthetic CDO	-	개정	-	개정
	CDO	-	개정	-	개정
	MBS	-	-	-	개정
	CMBS	-	개정	-	개정
	NPL 유동화	-	-	-	개정
	오브젝트금융	-	-	-	신규
소매채권 유동화	-	-	-	신규	
Cross-Sector	GRI 평가방법론	-	-	-	신규
	담보부사채 평가방법론	-	-	-	신규
	지주회사 평가방법론	-	-	-	개정
	하이브리드증권 평가방법론	-	-	-	개정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방법론	-	-	-	신규
기타	Sovereign Rating 평가방법론	-	-	-	개정
	지방자치단체 평가방법론	-	-	-	신규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 방법론	-	-	신규	-
	펀드신용평가방법론	신규	-	-	-

평가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방법론 대비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서두에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현행’표기)과 과거 평가방법론(‘종전’표기)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한 평가위원회 신용등급 결정기구 운영 (1.4, 1.8, 2.1~2.5)

당사의 신용등급은 개인 의견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참석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평가위원

회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평가경력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관련분야의 신용평가전문인력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분석적 요인(analytical factors)만을 고려하며, 당사, 발행사,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잠재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여 등급결정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며, 평가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의 평가위원회 참석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자료 보관에 관한 절차의 운용 (1.5)

당사는 신용평가 관련 문서 등의 기록 유지를 위하여 ‘평가자료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 관리에 관한 지침’은 평가자료의 범위, 평가자료에 관한 일반원칙, 신용평가조서의 작성 및 보관, 자료의 폐기 등 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신용평가 정보의 제공 (1.6)

당사는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지침’, ‘신용평가결과분석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하여 각종 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품질 관리 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오도할 수 있는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등급체계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측정하여 시장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공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정책부서의 독립된 위상과 기능 (1.2, 1.7)

당사의 평가정책부서(Credit Policy Group)는 평가정책과 평가절차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원칙을 수립하고 신용평가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및 평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신용평가 과정과 신용등급 결정의 독립성 및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새로운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 수행타당성 검토, 기초자산 위험 특성 변화 시 구조화 상품 방법론의 적합여부 판단, 각 평가그룹 간 주요 정책 및 관행의 조정 등을 주관하는 등 독립된 부서로서 위상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1.10~1.12)

당사는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일정 시점에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당사는 이를 “정기평가”라 지칭함) 외에도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

화에 따라 적절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다양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주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IS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 분	주요 내용
정기평가	평가대상기업의 의뢰와 상관없이 유효등급 업체 모두에 대해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기존 평가시 고려하였던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지를 점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
수시평가	유효등급 업체 중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자료를 토대로 신용도의 변동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시행
Watchlist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사건(Event)이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등급의 변동 방향성 예고'이자 '기부여된 신용등급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것으로서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
Credit Issue Review (CIR)	인수합병, 큰 폭의 지분변화, 거액의 투자발생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Credit Issue가 발생하는 경우 등급 변경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
Portfolio Review	산업 동향 및 주요 Credit Issues 등의 파악, 산업별 평가방법론 및 개별업체의 신용등급 검토 등을 통해 신용등급의 일관성 및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내부적인 모니터링으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
평가방법론 점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내 구조화실의 평가방법론에 대해서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검토(기업평가본부, 금융/구조화평가본부의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상기 Portfolio Review시 이루어짐)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의 체계화 -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1.13~1.20)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 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을 체계화하여 모든 신용평가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신용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공시, 사후관리, 기밀유지, 평가자료 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부수업무 및 비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평가의 실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업무와 절차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일반적인 신용평가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및 보고서 공개와 갱신 등과 같은 신용평가 업무의 주요 절차와 핵심원칙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신용평가부문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 간 분리 (2.5)

당사는 신용평가의 독립성 제고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업무처

리,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신용평가부문 조직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 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및 정보 교류도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2009년 8월부터 별도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조직에서 수수료 논의를 담당했던 직원이 신용평가를 포함한 다른 사업부문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수수료를 논의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PF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조직(PF평가부문) 또한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분리·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수업무 조직에서 신용평가부문 조직으로 이동 시 부수업무 조직에서 담당했던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업무에 1년 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신용평가부문 조직에서 부수업무 조직으로 이동 시)에도 동일하게 부수업무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용 (2.5~2.7)

당사는 신용평가 업무 이외에 컨설팅 등과 같은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비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되기는 하나 반드시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할 수 없는 부수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제324조의7에 규정된 신용평가업무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당사 ‘Project Finance본부’(PFG)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성 사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사업성평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KIS CoPC ‘용어의 정의’ 참조).

당사의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지만, 이들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IOSCO Code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당사의 신용평가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사안을 검토하여 이해상충 관계가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청인(의뢰인) 관련 정보공개 확대 계약체결 내역, 업무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의 공시 (2.8)

당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부수업무를 의뢰 받아 수행했는지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의견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용평가업무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발생 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당사는 2013년 2월부터 당사와 요청인(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당사에 의뢰한 자)간 맺은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신용평가업무 요청일, 계약체결일, 평가종료일 외에 당사가 요청인에 대해 최근 2년간 수행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를 건수 및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요청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은 당사가 수행하는 신용평가업무가 이해상충 등으로 인한 문제없이 내부절차에 따라 통제·관리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수수료 논의(Fee discussion) 금지 (2.12)

특정 부서 또는 인원(주로 영업부문에 조직에 해당) 외에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은 수수료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수수료 논의에 참여한 경우 당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업체 신용평가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수수의 엄격한 제한 (2.15)

재산상 이익 수수라 함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 식사 및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내규상 당사가 정한 재산상 이익 수수 한도 내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상 이익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상 이익 수수 관련 내부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수수 내용이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업체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³

퇴사자의 과거 업무에 대한 검토 (2.17)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외부이해관계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업무상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과거 2년 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소급하여 점검하고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³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률이 2013년 8월 29일 기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수수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게 되었음. 이에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관련사항을 위임 받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2013년 10월 이후 재산상 이익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개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음.

일반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책임

평가이력(Rating Actions) 및 적용 평가방법론의 명시 (3.1~3.6)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업체의 과거 신용등급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평가이력(평가일자, 평가종류, 평가등급 및 관련 Action)을 평가의견에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무엇이고, 해당 평가방법론 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자 평가의견 마지막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평가방법론 명시와 관련하여 당사 평가의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예시한 것입니다.

(예시)

동 평가에는 XX산업 평가방법론을 주요 방법론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다. 동 방법론 및 기타 방법론은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용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 (3.7)

당사가 부여한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신용등급이 도출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평가방법론에 현금흐름분석(손실기대치 포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표된 SF부문의 평가방법론 대부분은 현금흐름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보고서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 참조).

* 유의사항 *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of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of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조세 및 법 제도 변경 등의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미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재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 등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평가의견 ‘유의사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는 신용평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별 최근 1년간 부도율,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활용한 중요자료 목록 등도 평가의견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요청인(의뢰인)과의 계약 체결내역 등을 비롯해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확대하여 공시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관한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평가 실적(Rating Performance)에 대한 분석 및 공시 (3.10)

당사는 부도율 분석, 신용등급 변동현황,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 비교 및 차이분석 등에 관해 통계적 자료를 포함하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시기와 분야는 분기 단위로 회사채(Bond)에서 기업어음(CP), ABS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 및 금융감독당국은 당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의 performance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계량화된 통계기법 등에 따른 결과 등을 표준화된 체계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performance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는 등급의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당사가 공시하는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목록이며, 각 보고서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research/rating_performanc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현황]

보고서	대 상	주요 내용
Bond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2회)	- 부도율 분석: 연간부도율, 부도율의 변동성,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 분석 등 -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등급분포, 연도별 등급변동 추이,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등 - Outlook과 Watchlist 분석
CP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최근 기업어음 시장동향 -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급 간 상관관계 분석 - 신용등급 변동현황 - 부도율 분석
ABS Rating Performance	2000년 이후 장기간 또는 연간 기준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현황 및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동향 -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 부도율 및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 차이분석	당사 신용등급과 해당 채권의 시장수익률(BIR)의 추이 및 차이 등에 대한 원인 분석(연 2회-상/하반기)	- 회사채 시장동향 - 신용등급과 BIR 비교 및 차이분석 - 주요 차이발생 업체 분석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기 단위로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대한 결과 분석(연 4회)	- 신용등급 분포 - 등급변동 현황 - Outlook과 Watchlist 현황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4.1~4.5)

KIS CoPC는 신용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및 투명성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

책을 명시함으로써 당사 신용평가업무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KIS CoPC를 대외적으로 공시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관련 실적(Rating Performance) 및 연구성과물은 물론 평가정책 및 그것에 관한 자료 등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 및 일반대중 등 회사 외부에서 당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직원교육

준법감시부서 인원의 독립성 (5.1)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준법감시부서는 평가활동이나 영업활동, 기타 직원의 보수 수준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보수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사 경영성과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5.2)

당사는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한 축인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소양과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상을 구축하는 기반이 됨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따라 연간 교육이수시간은 달라지지만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책 방향과 임직원의 개인별 관심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외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Moody's와 연계하여 Moody's에서 주관하는 신용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일반과정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Ⅲ. KIS CoPC와 IOSCO Code 와의 차이

Section 1.7- 평가정책부서의 역할

IOSCO Code (2015.03)	KIS CoPC(2018.01)
<p>1.12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평가한 법인 또는 채무와 실질적으로 다른 특정 형태의 법인 또는 채무에 대한 신용등급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senior managers)로 구성된 평가기능(review function)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	<p>평가정책부서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p> <p>1.7.1. 과거에 KIS가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p> <p>1.7.2 KIS가 사용하는 평가방법론과 모델 및 그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 검토</p> <p>1.7.3 구조화 상품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판단</p> <p>구조화 상품이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KIS는 그 상품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p>

IOSCO Code는 과거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지정된 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평가정책부서가 평가정책과 평가 절차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원칙 수립, 평가기법 개발 및 관리 등 평가정책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능을 평가정책부서의 역할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규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Section 3.3 – 구조화 금융상품 관련 정보

IOSCO Code (2015.03)	KIS CoPC(2018.01)
<p>2.9 신용평가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발행자가 평가 받는 채무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고 신용평가회사에 밝혔는지 아니면 비공개정보로 유지한다고 밝혔는지에 대해 신용평가 발표 시 공시하여야 한다.</p>	<p>3.3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장려한다.</p>

IOSCO Code는 구조화 금융상품 발행자가 신용평가대상 채무와 관련된 정보 공시 여부를 신용평가사에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 CoPC에서는 구조화금융상품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